

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제출 공지

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작성과 제출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
1.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

- 선거공보 파일(pdf)
 - 제출기한 : 2021. 6. 25.(금) 18:00
 - 검인 후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(이하 총추위) 게시판 게재
- 선거공보 인쇄물
 - 제출기한 : 2021. 6. 29.(화) 18:00 (추천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)
 - 예상선거인수 : 502명(학생을 제외한 교원, 직원, 조교 예상 선거인)
 - 작성 및 제출수량 : 560부(예상선거인수의 100분의 10을 더한 수)
 - ※ 선거공보 인쇄물이 560부를 초과하는 경우 총추위 사무실에 비치할 권고(총추위에서 선거공보 발송 외에는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배부할 수 없음)
- 선거공보 기재·게재 사항
 - 성명, 기호 및 사진
 - 학력 및 주요 경력
 - 주요 연구업적 목록
 - 대학관 및 총장관
 - 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소견

2. 선거벽보에 관한 사항

- 선거벽보 파일(pdf)
 - 제출기한 : 2021. 6. 25.(금) 18:00
 - 검인 후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(이하 총추위) 게시판 게재
- 선거벽보 인쇄물
 - 제출기한 : 2021. 6. 29.(화) 18:00
 - 단, 제출기한 이전에 입후보자 모두 제출한 경우 벽보 부착 진행
 - 제출수량 : 22부
 - ※ 후보자가 보완접부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8부

3. 기타사항

- 작성시 선거명은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로 표시
- 제출서식은 붙임 [별지 제14호 서식] 선거공보·선거벽보 제출서 참조
-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제출 장소는 총추위 사무실(도서관 204호)

○ 규격을 비롯한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

붙임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관련 규정(발체) 1부.

2021. 6. 16.

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

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

제23조(선거공보)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선거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·제재하여야 한다.

1. 성명, 기호 및 사진
2. 학력 및 주요 경력
3. 주요 연구업적 목록
4. 대학관 및 총장관
5. 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소견

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선거공보를 검인하여야 한다. 이상이 있는 경우 후보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선거공보를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거쳐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.

⑤ 추천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발송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송하게 할 수 있다. 단, 학생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홈페이지에만 게시한다.

⑥ 후보자가 제1항제2문에 정한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.

⑦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의 내용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. 다만, 오기 또는 「위탁선거법」이나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·색상·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.

⑧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내용 중 제2항제2호·제3호의 사항이 거짓 사실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그 사실을 공고하고,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 붙일 수 있다.

⑨ 선거공보의 규격·면수·수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27조(선거벽보)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.

- ③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선거공보”는 “선거벽보”로, “규격을 넘는”은 “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” 것으로 본다.
- ④ 선거벽보의 작성수량·첨부수량·규격·제출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
제6조(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제출·정정)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선거공보 검인은 별지 제13호 서식,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출 및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벽보 제출은 별지 제14호 서식, 규정 제23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정정 요청 및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요청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.

제9조(선거공보) ① 규정 제23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·면수 및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규격: A4 용지 세로 방향 (길이 297 밀리미터, 너비 210 밀리미터 이내)
2. 면수: 8면 이내
3.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: 선거명, 후보자의 기호, 성명 및 사진

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예상 선거인수, 선거공보의 작성·제작에 필요한 세부사항, 선거공보의 검인일자 및 검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선거공보(안) 등의 사항을 공지하며,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작성 및 제출수량, 제출장소, 제출기한을 통보한다.

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학생 선거인수를 제외한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수량을 공지한다.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수량은 예상 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. 이 경우 작성·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.

④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등재순(교원, 직원, 조교)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공보의 형식 및 우송 방식을 추천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.

⑤ 추천위원회가 규정 제23조제5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관할선관위가 우송하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준비 및 필요 사항에 관해 관할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관할선관위와 협의된 방법과 기한을 준수하여 선거공보를 관할선관위에 인도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송이 아닌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.

⑥ 규정 제23조제8항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신청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규정 제23조제8항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공보의 제출·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

⑧ 추천위원회는 온라인 선거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공보의 작성·제작에 필요한 세부사항, 작성 및 제출수량, 제출방법 및 발송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. 단,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0조(선거벽보) ① 규정 제27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.

②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, 후보자가 보완첩부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. 이 경우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

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.

③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의 수량이 첩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지정한다.

④ 후보자는 추천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려는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.

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
선거공보(안) 검인 확인서

기호		성명	
----	--	----	--

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위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(안)을 「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인 확인합니다.

■ 공보검인 내용

기재사항	기재 여부	증빙서류 대조확인	위원회 확인
성명, 기호 및 사진			
학력 및 주요경력			
주요 연구업적 목록			
대학관 및 총장관			
대학발전방안에 대한 소견			

검인 결과	
----------	--

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

선거공보·선거벽보 제출서

- 1. 선 거 명: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
- 2. 후보자성명:
- 3. 제 출 내 역

구 분	작성수량	제출하여야 할 수량 (가)	제출수량 (나)	부족수량 (가) - (나)	비 고
선거공보					
선거벽보					

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·선거벽보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후 보 자 인

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

주 : 1. "제출하여야 할 수량"은 추천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수량을 적습니다.
2. "제출수량"은 추천위원회에 실제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.

선거공보 · 선거벽보 정정요청서

선 거 명		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		
후보자	성 명			기 호
	생년월일	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
	주 소			

- 1. 정정 매수 :
- 2. 정정 내용 :
- 3. 정정 이유 :

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·선거벽보 내용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
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후 보 자 〇 〇 〇 인

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

주 : 1. 이 신청서는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"정정 매수"칸에는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적습니다.